

대전지방법원 2015. 10. 13 선고 2015가단23182 판결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등]

전 문

원 고 A

피 고 B

변론 종결 2015. 9. 15.

판결 선고 2015. 10. 1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충남 금산군 C 대 2,684㎡ 중 별지 감정도 표시 25, 26, 27, 28, 29, 30, 45, 44, 43, 42, 41, 40, 2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L)부분 296㎡지상의 별지 감정도 표시 (1) 주택 17㎡, (2) 주택 35㎡, (3) 화장실 14㎡, (4) 건조장 15㎡를 각 철거하고, 위 (L)부분 296㎡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4. 24. D로부터 충남 금산군 C 대 2,684㎡(이하 '이 사건 토지'라한다)를 매수하여 2013. 5. 22.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25, 26, 27, 28, 29, 30, 45, 44, 43, 42, 41, 40, 2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296㎡ 지상에 건축된 별지 감정도 표시 (1) 주택 17㎡, (2) 주택 35㎡, (3) 화장실 14㎡, (4) 건조장 15㎡의 소유권자내지 사실상 처분권자로서 위 (나)부분 296㎡를 점유·사용하고 있다.

[인정 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각 해당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 중 해당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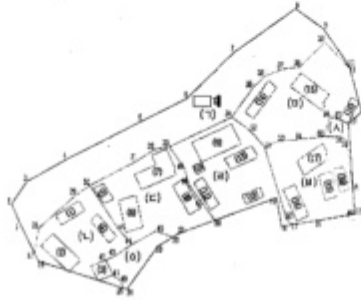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명희

법원감정도

토지소재 : 충청남도 금산군

사 건 : 2013가단 52957 건물철거등



현황표시

번호	명칭
1	지적선
2	현황선
3	건물(외벽)

현황표시

부호	건물	용도	면적(m ²)	점유자
(A)	(1)	주택	17	
	(2)	주택	35	
	(3)	화장실	14	
	(4)	건조장	15	
(B)	(5)	창고	11	
	(6)	주택	31	
	(7)	주택	45	
	(8)	하우스	24	
(C)	(9)	주택	52	
	(10)	창고	5	
	(11)	주택	18	
	(12)	화장실	10	
(D)	(13)	하우스	21	
	(14)	주택	22	
	(15)	주택	34	
	(16)	건조장	13	
(E)	(17)	주택	26	
	(18)	주택	24	
	(19)	하우스	18	
	(20)	건조장	13	
	(21)	화장실	1	

지번	부호	면적(m ²)	비고	점유자 시부소	용도
	(A)	762	12,24,55,72,9,38,11,38,38,37,36,35,34,33,32,31,30,29,28,27,1	각 정을 연결한 선내부분	임야
	(B)	296	25,26,27,28,29,30,45,44,43,42,41,40,25	각 정을 연결한 선내부분	대지
	(C)	376	30,31,32,33,49,48,47,20,21,22,46,44,45,30	각 정을 연결한 선내부분	대지
	(D)	384	33,34,52,51,50,17,18,19,20,47,48,49,33	각 정을 연결한 선내부분	대지
	(E)	421	11,12,13,57,56,55,54,53,51,52,34,35,36,37,38,39,11	각 정을 연결한 선내부분	대지
	(F)	338	14,15,16,17,50,51,53,54,55,56,59,14	각 정을 연결한 선내부분	대지
	(G)	26	13,14,59,58,56,55,57,13	각 정을 연결한 선내부분	전임도포
	(H)	81	22,23,24,25,40,41,42,43,44,45,22	각 정을 연결한 선내부분	전임도포
계		2584			

2014년 08월 22일

감정인 : 지적기사 (인)